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48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춘화, 문찬두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1. 1.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7가단503627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75,707,0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각자 원고에게 75,707,0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75,707,0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1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75,707,0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707,04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11. 15. 접수 제2122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면 하4행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하나(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이상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되는 것으로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제1심 공동피고 D과 전득자인 피고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및 2019.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2014. 6. 10.자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이상 전득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 10. 6.자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점 및 채무자인 E이 이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71,5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 10. 6.자 매매계약 및 2016. 11. 14.자 매매계약 후인 2016. 11. 2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이 142,510,791원으로 계산되는 점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75,707,043원의 한도로 2014. 10. 6.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은 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전득자인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 10. 6.자 매매계약은 75,707,0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제도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수익자나 전득자 중 1인으로부터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다른 한쪽의 원상회복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서 제1심 공동피고 D과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2014. 10. 6.자 매매계약은 위 75,707,0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각자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위 75,707,04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제7면 하3행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면 하5행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를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면 하4행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취소 및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이수진, 판사 박동복

부동산의 표시

1. 광주 복구 대 199.6㎡

2. 광주 복구

[도로명주소] 광주 복구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7.38㎡

2층 51.21㎡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32㎡

- 이 상 -